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문

1 사업개요

-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원하는 제도

2 지원내용

-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***“취업애로청년”**에 대해 채용 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.(채용일은 22.1.1.~22.12.31.이어야 함)
-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원, 1년 최대 960만원
 - * 취업애로청년 :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~34세 청년
(단, ①고졸 이하 학력자, ②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, ③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④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⑤보호종료아동, ⑥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자, ⑦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는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) (입증 자료 필수 제출)

3 참여대상

-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대상기업 사업주(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) 단,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아래 목록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
 - ①성장유망업종, ②지식서비스산업 관련업종, ③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
 - ④신·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, ⑤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
 - ⑥미래유망기업 ⑦지역주력산업 ⑧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⑨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(입증 자료 필수 제출)

4 지원요건

- 정규직 채용
- 6개월 이상 고용유지
- 주 30시간 이상 근로
- 4대 사회보험 가입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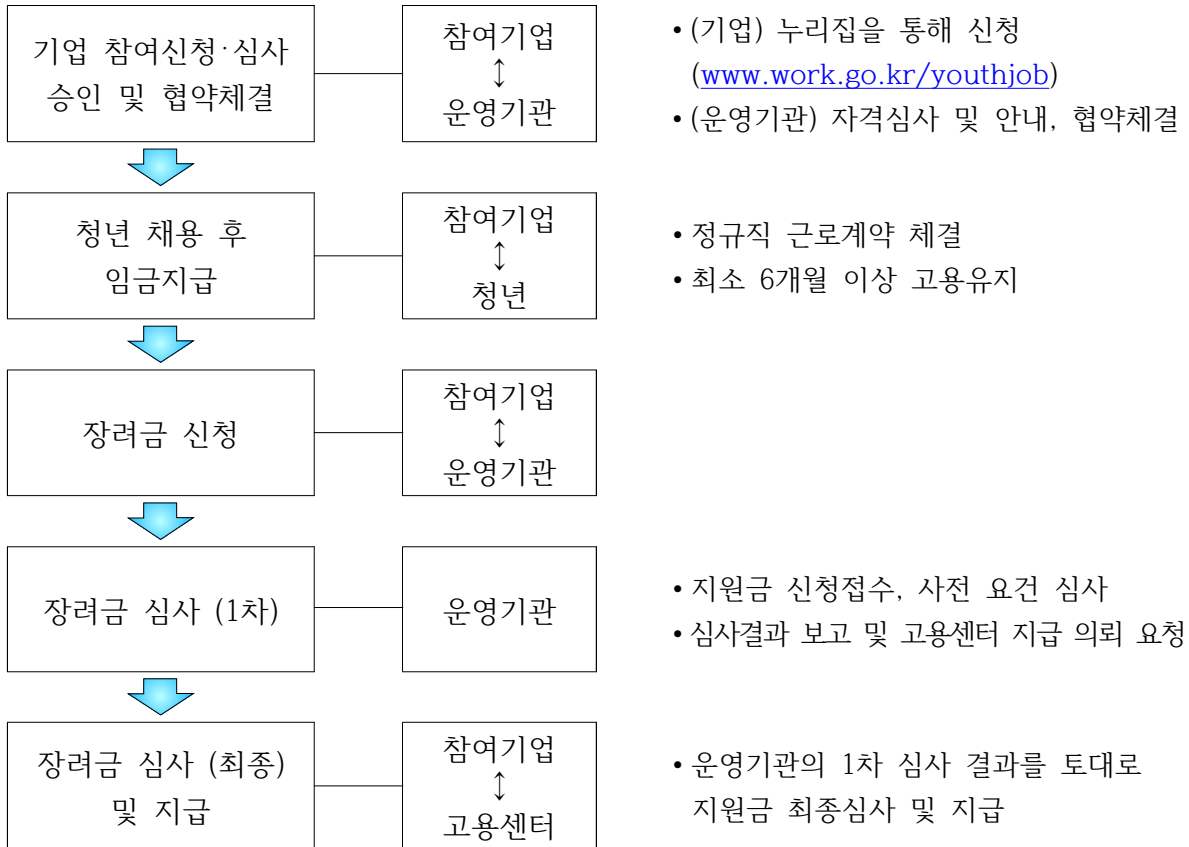
5 지원한도

-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%까지 지원가능 (최대 한도 30명)
- 기준 피보험자 수에 100%(비수도권 기업의 경우)를 곱하여 산출, 소수점 이하는 올림
 - ① '22.1월에 부산(비수도권)에서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기업이 '22.5월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을 하며, '22.1월~4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34.2명인 경우
 - ☞ 34.2를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기준 피보험자 수는 35명 → $35 \times 1 = 35$ → 최대 30명 지원 한도가 적용 되어 지원 한도 30명
 - ② '21.7월에 부산(비수도권)에서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기업이 '22.4월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을 하며, '21.7월~'22.3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3.2명인 경우(성장유망업종에 해당)
 - ☞ 3.2명을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하여 기준 피보험자 수는 4명 → $4 \times 1 = 4$ → 지원 한도 4명

6

신청방법

- 『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누리집』(www.work.go.kr/youthjob)에서 온라인 신청
 □ 운영기관 조회 ▶ (지역) 부산 ▶ (운영기관) 빛솔인재개발원 지정



7

유의사항

-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이 종료된 후,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 (6개월 근속 후 480만원이 일괄 지급됨)
 ex) 2월 6일 정규직 채용 → 8월 6일 ~ 10월 5일 사이 1회차 장려금 신청
- 장려금 신청 시 기업이 직접 지원금을 신청(필수) ※미신청 시 미지급
-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,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(단, '22.1.1.이후) 청년을 채용하고, 다른 지원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
-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(고용조정 이직)금지. (모든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금지)
 ※감원이력 발생 시 지원금 중단 및 재신청 불가
- 기업구분 선택 시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
- 신청 시 첨부파일에 사업자 등록증 첨부
- 신규 인원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『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누리집』(www.work.go.kr/youthjob)을 통해 채용자 명단을 제출 (필수)

※ 사업 신청과는 별개로 정규직 채용이 늦을 시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